

클래스원신종MMF(S-36호)

이 투자설명서는 클래스원신종MMF(S-36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클래스원신종MMF(S-36호)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투 자 신 탁 명 : 클래스원신종MMF(S-36호)
2. 자산운용회사명 : 대한투자신탁운용(주)
3. 판 매 회 사 명 : 대한투자증권(주) Tel. 1588-3111
하나은행(주) Tel. 1588-1111
하나증권(주) Tel. 02-3771-3000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 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보전하지 않습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07년 3월 22일
5. 투자설명서 비치·공시장소 및 인터넷게시주소

: 대한투자증권(주)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www.daetoo.com

하나은행(주)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www.hanabank.com

하나증권(주)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www.clickhana.co.kr

대한투자신탁운용 인터넷 홈페이지 www.dimco.co.kr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amak.or.kr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요약]

제 1 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2. 신탁계약기간
3. 종류
4. 자산운용회사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6. 해지사유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2. 주요 투자전략
3. 주요 투자위험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5. 투자실적
 - 가. 연도별 수익률 추이
 - 나. 연평균 수익률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2. 환매
3. 이익 등의 분배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 정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2. 투자위험
3. 투자대상
4. 투자제한

II. 자산의 평가,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1. 자산평가
2.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업무
3. 최근 2 개 사업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4. 운용자산 규모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III.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제 4 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2. 잔여재산분배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에 관한 사항
4. 손해배상책임
5. 재판관할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2. 수시공시

투자설명서 요약

이 투자설명서 요약은 본 투자설명서 전체에 대한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입니다. 각 부문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투자자들께서는 본 투자설명서 본문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I. 투자신탁의 개요

- | | |
|-----------|--------------------------------|
| 1. 명 칭 | 클래스원신종MMF(S-36호) |
| 2. 신탁계약기간 |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 해지일 까지로 함. (무기한) |
| 3. 종 류 | 단기금융간접기구, MMF, 추가형, 개방형, 공모형 |
| 4. 자산운용회사 | 대한투자신탁운용 |

II. 투자 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개인용 단기금융투자신탁으로서 주로 채권 및 어음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주요 투자전략
-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이자수익의 확보에 주력합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재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 조정을 통하여 유동성확보 및 안정적인 운용을 추구합니다.

3. 주요 투자위험
- 이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 및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투자원본 손실위험/시장위험 및 개별위험/채권투자위험/유동성위험/환매제한 및 환매연기위험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투자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권 및 어음등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내 기업에 투자하므로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의 위험등급은 5등급중 매우낮은 5등급에 해당하므로 주식형 및 다른 채권형 상품에 비해 기대수익이 적고 투자위험이 낮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5. 투자실적 추이
(단위 %)

<연도별 수익률 추이>

연도	1년차 2001.06.07 ~ 2002.06.06	2년차 2002.06.07 ~ 2003.06.06	3년차 2003.06.07 ~ 2004.06.06	4년차 2004.06.07 ~ 2005.06.06	5년차 2005.06.07 ~ 2006.06.01
투자신탁	4.51	4.39	3.67	2.76	3.43

※위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상품은 비교지수가 없습니다.

Ⅲ. 매입·환매 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수익자가 부담하는 비용	선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비용 (연 100분의)	자산운용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0.1356%	매 6개월 후 급 및 투자신탁의 해지시
	판매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0.3164%	
	수탁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0.03%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0.018%	
	기타 비용 (주1)	순자산총액의 0.0050% (투자증권의 매매수수료 등 실비)	사유발생시 지출
합 계		순자산총액의 0.5050%	-

(주1) 기타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정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직전 1년(2005년 6월 2일부터 2006년 6월 1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수수료 및 보수 정보를 위해 본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투자신탁이 투자한 투자대상에서 발행한 이자·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7.3월 말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 상기 세율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향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3. 매입·환매 절차 등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 또는 환매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매입방법>

[수익증권의 판매가격]

(1) 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2) 오후 5시 이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환매방법>

[수익증권의 환매가격]

(1) 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2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2)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다만, 거래당일의 시장정보를 활용한 수익자간 불균형 문제 발생여지가 없는 경우로서 판매회사가 인정한 거래는 매입신청/환매청구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당일 매입 및 환매가 가능. 또는 판매회사의 고유자금으로 MMF를 매입하여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환매 가능.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 1. 명칭 클래스원신중MMF(S-36호)
- 2. 신탁계약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 해지일 까지로 함. (무기한)
- 3. 종류 단기금융간접기구, MMF, 추가형, 개방형, 공모형
- 4. 자산운용회사 대한투자신탁운용
-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최초설정일 : 2000 년 6 월 7 일
 약관변경일 : 2004 년 7 월 5 일
 약관변경일 : 2005 년 6 월 7 일
 약관변경일 : 2005 년 6 월 13 일
 약관변경일 : 2005 년 7 월 22 일
 약관변경일 : 2005 년 11 월 1 일
 약관변경일 : 2007 년 3 월 22 일 (매입 및 환매방법 변경)

- 6. 수탁고 추이
(단위 : 억원, %)

연도	현재 20060601	6개월전 20051201	1년전 20050601	1년6개월전 20041201	2년전 20040601
수탁고금액	27,644	21,387	568	546	659
수탁고증가율	29.26	3,668.07	3.92	-17.10	-13.41

- 7. 해지사유 자산운용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 전원이 동의하거나,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거나,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를 받아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II. 투자 정보

-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개인용 단기금융투자신탁으로서 주로 채권 및 어음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2. 주요 투자전략 -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이자수익의 확보에 주력합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재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 조정을 통하여 유동성확보 및 안정적인 운용을 추구합니다.

- 3.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위탁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재산을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개별위험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권투자위험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권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권 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 위험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약관 제25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약관 제2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연기 또는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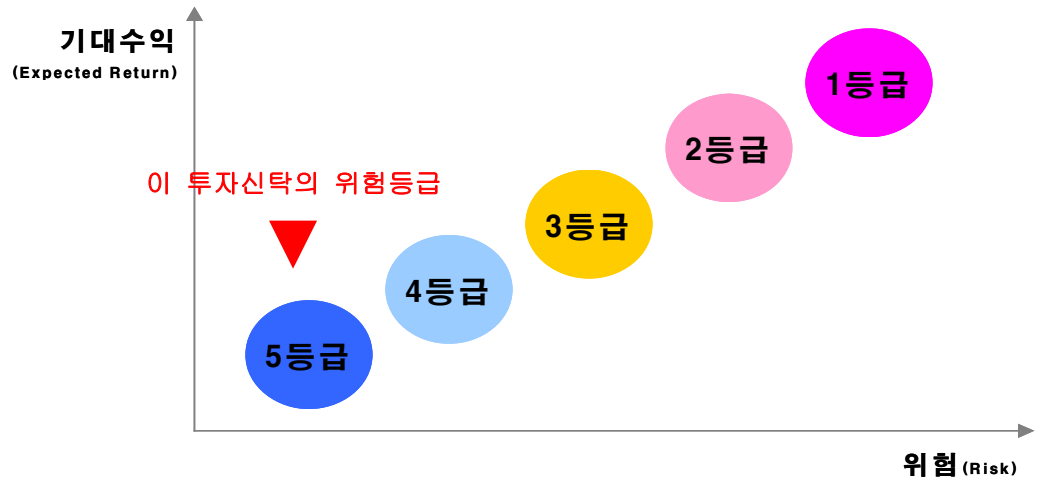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권 및 어음등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내 기업에 투자하므로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의 위험등급은 5 등급중 매우낮은 5 등급에 해당하므로 주식형 및 다른 채권형상품에 비해 기대수익이 적고 투자위험이 낮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투자위험 등급구분]

- 1 등급 : 매우높음
- 2 등급 : 높음
- 3 등급 : 중간
- 4 등급 : 낮음
- 5 등급 : 매우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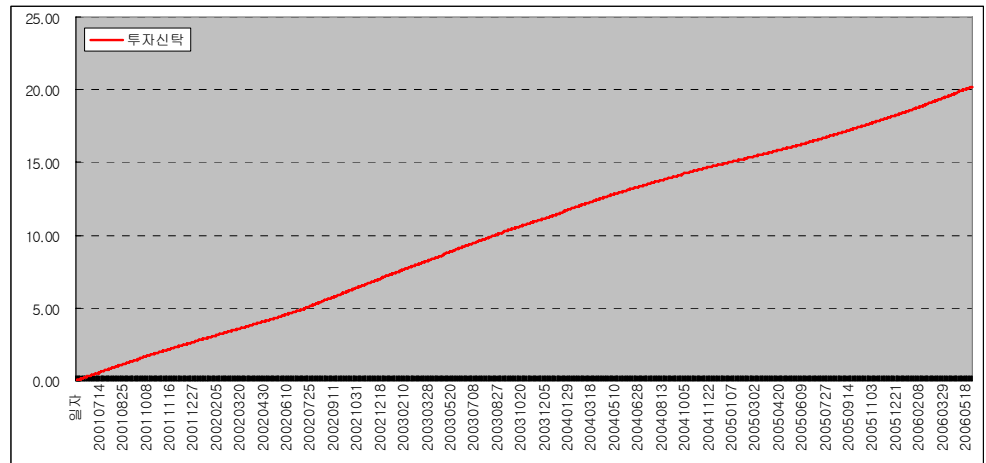
분 류	투자위험 수익성 변동성	정 의	대표 상품 유형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변동성 매우 높음	가격 변동성이 큰 주식에 60% 이상 투자	순수주식형
2등급	높은 위험 변동성 높음	가격 변동성이 큰 주식에 최소 50% 이상 투자하거나 또는 원금손실이 가능한 장외파생상품에 투자	주식혼합형 원금손실가능 ELF
3등급	중간 위험 변동성 중간 수준	가격 변동성이 큰 주식에 50% 이내에서 투자	채권혼합형
4등급	낮은 위험 변동성 낮음	주식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작은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거나 또는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장외파생상품에 투자.	채권형 원금보존추구형 ELF
<u>5등급</u>	<u>매우 낮은 위험</u> <u>변동성 매우 낮음</u>	<u>채권을 장부가 평가하여 수익 변동성이 시가 평가를 하는 채권형 펀드에 비해 상당히 낮음.</u>	<u>MMF</u>

5. 투자 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협회(<http://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이 투자신탁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 %)

연도	1년차 2001.06.07 ~ 2002.06.06	2년차 2002.06.07 ~ 2003.06.06	3년차 2003.06.07 ~ 2004.06.06	4년차 2004.06.07 ~ 2005.06.06	5년차 2005.06.07 ~ 2006.06.01
투자신탁	4.51	4.39	3.67	2.76	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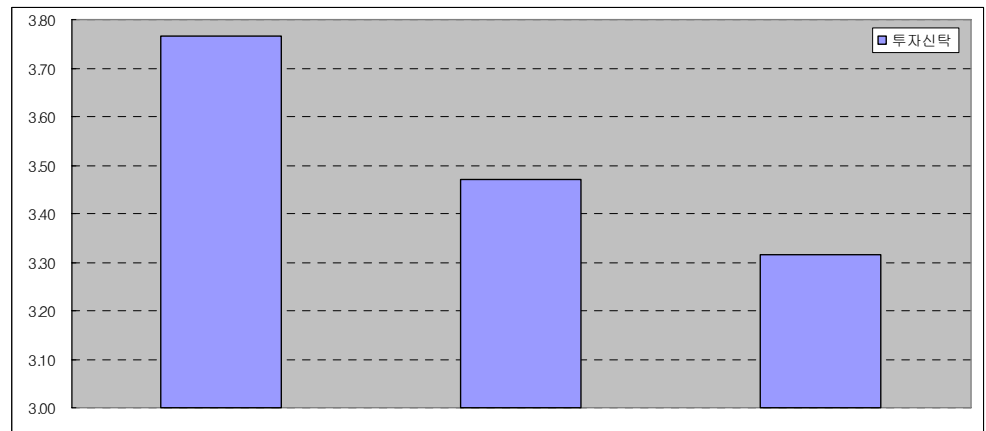


※위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상품은 비교지수가 없습니다.

나. 연평균 수익률
(단위 : %)

연도	6개월 2005.12.02 ~ 2006.06.01	1년 2005.06.02 ~ 2006.06.01	3년 2003.06.02 ~ 2006.06.01
투자신탁	3.77	3.47	3.31



※위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상품은 비교지수가 없습니다.

Ⅲ.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비 고
선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없음	-	-
재투자수수료	해당사항없음	-	-
환매수수료	해당사항없음	-	-
기타수수료	실비청구	-	수익증권발행 수수료 등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비용 (연 100분의)	자산운용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0.1356%	매 6개월 후 급 및 투자신탁의 해지시
	판매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0.3164%	
	수탁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0.03%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0.018%	
	기타 비용 (주1)	순자산총액의 0.0050% (투자증권의 매매수수료 등 실비)	사유발생시 지출
합 계	순자산총액의 0.5050%	-	

(주1) 기타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직전 1년(2005년 6월 2일부터 2006년 6월 1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수수료 및 보수 정보를 위해 본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간수수료 부담 예시 (단위 : 원)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51,671	162,067	282,583	634,45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등]

- 투자증권의 매매수수료
- 투자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 투자증권등의 가격정보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시 환급받게 되므로 투자신탁에서는 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투자신탁이 투자한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5.12 월 말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장주식,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거래에서 발생되는 매매□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개인	일반법인	금융법인
소득세	14%	14%	-
주민세	1.4%	-	-
계	15.4%	14%	-

※ 상기 세율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향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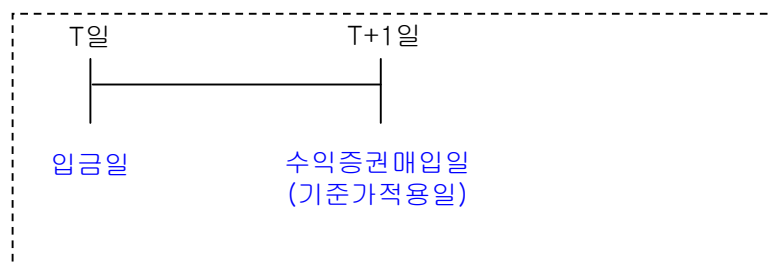
1. 매입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매입을 하셔야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영업일은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수익증권 매입시
기준가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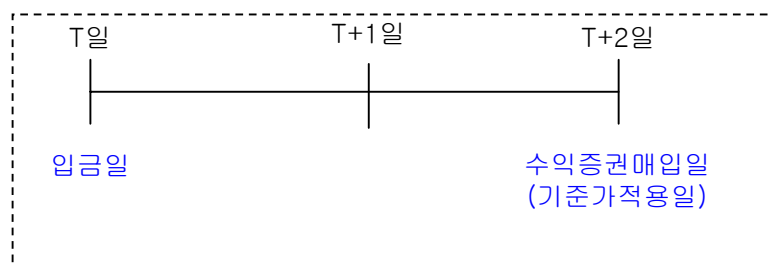
(1) 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2) 오후 5시 경과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3) 다만, 최초설정시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 적용

2. 환매

□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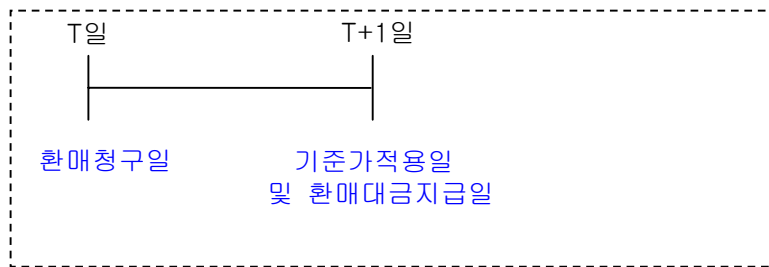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 환매시 기준가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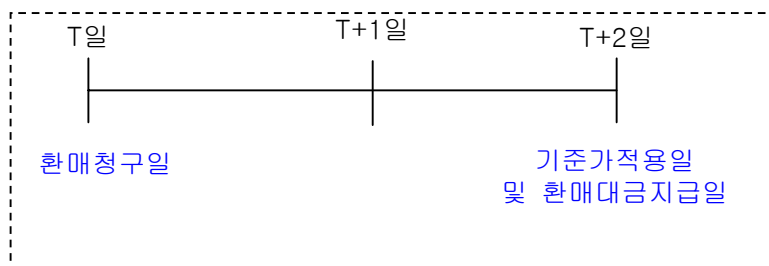
(1) 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2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2)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3. 매입/환매 방법
적용 예외 사항

- 다음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로서 판매회사가 인정한 거래는 다음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매입 또는 환매할 수 있습니다.

(1) 거래당일의 시장정보를 활용한 수익자간 불균형 문제 발생여지가 없는 다음의 경우로서 판매회사가 인정한 거래는 **매입신청/환매청구일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당일 매입 및 환매가 가능합니다.** 단, 업무가 전산으로 처리되고 관련 증빙자료를 판매회사는 3년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① 주식 등 다른 증권(결제소요 2일이상)의 매매와 연계하여 MMF 계좌의 매입신청 및 환매청구가 예약되어 있는 경우

② 유희자금을 MMF에 자동적으로 운용하는 계좌에서 급여입금, 공과금 납부 등 주기적인 매입신청 및 환매청구 거래에 대한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

(2)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으로 MMF를 매입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

① 판매회사의 MMF별 판매규모의 5%와 100 억원 중 큰 금액의 범위안에서 판매회사가 투자자의 MMF를 매입하여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를 청구한 날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당일 환매**할 수 있습니다.

②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으로 MMF 환매에 응하는 것은 판매회사의 고유권한으로 판매회사의 판단에 따라 투자자의 MMF를 매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판매회사에 MMF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17 시 경과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수익증권의 환매연기·부분환매 사유 및 절차 등> 법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신탁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이익등의 분배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 기간 종료시 및 신탁기간 만료시에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합니다,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환금등의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지체없이 상환금등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의 매각지연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채산을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이자수익의 확보에 주력합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채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 조정을 통하여 유동성확보 및 안정적인 운용을 추구합니다.
- 국고, 통안채 위주로 투자하여 신용리스크 최소화 합니다.
- 예금 및 우량 CD에의 투자로 안정적 수익률확보 및 유동성확보에 Focus를 둡니다.

2.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 이 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위탁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 신탁채산을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채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권투자위험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권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권 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채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채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 위험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약관 제25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약관 제2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위험	신탁채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계의 변경 등에 따라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연기 또는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3.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대상 내역
채권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
어음	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증정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
수익증권 등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단기금융투자신탁의 수익증권(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설정된 증권투자신탁으로서 법에 의해 단기금융투자신탁으로 신탁약관을 변경한 단기금융투자신탁으로서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수익증권을 포함한다) 및 단기금융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각호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6월 이내인 상품에 한함) -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기업어음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 	

- 신용평가등급제한

신용평가 등급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신탁약관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채권 및 어음등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2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하 “상위2개등급”이라 한다)이내이어야 함.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이 상위2개등급에 미달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할 수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2개등급 이내인 투자증권 2. 담보 또는 처분옵션을 감안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2개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투자증권 3.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투자증권으로서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2개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투자증권 - 투자신탁에서 운용하는 채권 및 어음등의 신용평가등급(투자신탁약관 제37조제2항제1호의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 포함)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당해 채권 및 어음등에 대한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수익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투자신탁에 편입된 채권 및 어음등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2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투자신탁약관 제3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편입된 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2개등급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및 어음등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함.
--------------	---

4. 투자제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p>동일종목 투자</p>	<p>- 투자증권의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5%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 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6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p>
<p>동일회사 발행 주식 투자</p>	<p>- 동일종목 투자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 대방으로 하는 기타 거래금액(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2개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p>	
<p>투자금지</p>	<p>-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채권총액의 5%를 초과하여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는 행위</p> <p>-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투자증권을 대여하는 행위</p> <p>-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수익증권등에 투자하는 행위</p> <p>-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행위</p> <p>-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다음 각호의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p> <p>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 제1호, 제1호의2, 제3호, 제3호의2, 제3호의3의 자산 또는 외화로 표시된 자산</p> <p>나. 단기금융투자신탁 및 단기금융투자회사가 아닌 간접투자증권</p> <p>다. 주식관련 사채 및 사모사채</p> <p>라.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환율·투자증권의 가치 또는 투자증권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p>	

	<p>설계된 자산</p> <p>마. 위의 라목과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잔존기간 1년 이상의 채권 및 어음등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가 90일을 초과하는 행위 	
후순위채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한도초과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투자신탁약관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II. 자산의 평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1. 자산의 평가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가(취득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액을 취득가액 및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평가합니다. - 기준가격 계산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법령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을 1,000원으로 하고 이 경우 1좌는 1원으로 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매일 산정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매영업일에 공시·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고·게시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www.dimco.co.kr)

Ⅲ. 투자증권 등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1. 중개회사 선정기준

중개회사 선정기준의 기본원칙은 간접투자재산의 이익 기여도 및 매매체결 능력 등 월 단위로 평가하여 배정비율을 결정하고 그 비율에 맞추어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증권 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합니다.

구분	선정기준
채권 등	매월 리서치부문, 운용역지원부문, 정보제공부문, 운용 및 회사기여도부문을 기준으로 투자전략팀, 채권운용팀에서 개별 평가 한 후 상위 중개회사를 기준으로 채권운용본부 내 협의를 통해 선정 합니다.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대한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T : 3771-7114)
회사연혁	1968.12.16 한국투자공사 설립 1970. 5.20 한국투자공사 증권투자신탁업무 시작 1977. 2.14 한국투자공사 대한투자신탁과 증권감독원으로 분리 2000. 6. 4 증권사 전환으로 대한투자신탁증권(주)로 사명 변경 2000. 6.27 대한투자신탁운용(주) 설립(대한투자증권(주) 전액출자) 2000. 7. 1 영업개시

2. 주요 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의무 및 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업무의 위탁>

자산운용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투자신탁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HSBC펀드서비스(주)에 위탁하였습니다.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는 수익자명부 작성업무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합니다.

상기 업무등의 위탁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있습니다.

3. 최근 2개 사업연도
의 요약재무내용

(단위:백만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항 목	'05.03.31	'06.03.31	항 목	'05.03.31	'06.03.31
유동자산	51,831	59,522	영업수익	14,460	21,262
고정자산	3,631	3,947	영업비용	12,920	14,132
자산총계	55,462	63,469	영업이익	1,541	7,130
유동부채	1,018	4,097	영업외수익	235	74
고정부채	507	591	영업외비용	25	382
부채총계	1,526	4,687	경상이익	1,750	6,822
자본금	45,000	45,000	특별이익	-	-
이익잉여금	8,936	13,781	특별손실	-	-
자본조정	0	0	법인세	572	1,977
자본총계	53,936	58,781	당기순이익	1,178	4,845

4. 운용자산규모
(2006. 6. 1. 현재)
(단위:억원)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기타	합 계
13,300	39,786	57,726	73,512	21,303	205,627

5. 운용전문인력에 관
한 사항

성 명	나이	학력	운용 경력	주요경력	협회등록 번호
전나영	만31세	경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1	채권운용	05- 01002- 0088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운용회사 또는 자산운용협회에서 추가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사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을 교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판매회사의 영업점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구분	내용	
하나은행(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T : 2002-1111)
	연혁	1971.06 한국투자금융(주) 설립 1991.07 하나은행으로 전환 1998.10 충청하나은행 출범 1999.01 합병 하나은행 출범 2002.12 서울은행과 통합
	영업점포현황	서울지점 : 144개, 지방지점 : 부산지점 등 142개
	주요판매실적	2003년 12월 8,625억 2004년 12월 38,850억
대한투자증권(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T : 1588-3111)

	연혁	1968.12 한국투자공사 설립 2003.06 사명변경(대한투자증권)
	영업점포현황	72개 영업점
	주요판매실적	2004년 3월 : 197,733억 2003년 3월 : 199,799억
하나증권(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T : 02-3771-3000)
	연혁	1962. 2. 7 창립 1992. 7. 1 상호변경 (보람증권) 1999. 5. 15. 상호변경 (하나증권)
	영업점포 현황	23개 영업점
	주요판매실적 (수익증권 등)	2005년 3월 : 16,459억 2004년 3월 : 14,466억 2003년 3월 : 12,310억

2. 주요 업무

-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
- 수익증권 환매업무
- 수익증권 교부업무
-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
- 각종 장부·서류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공고 업무
-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의무 및 책임>

신탁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할 때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기타 주요 사항을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합니다.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 받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판매행위준칙등>

①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판매행위준칙(이하 이 조에서 "판매행위준칙"이라함)을 제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판매행위준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1.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2. 투자자로부터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

3.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4.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시행령이 정하는 행위
- ②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③판매회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증권의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고유재산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④자산운용회사는 법 제 55 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간접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⑤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⑥자산운용협회는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행위준칙과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Ⅲ.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 수탁회사명 : 우리은행(주)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T : 2002-3000)

일 자	연 혁
1899. 01	대한천일은행 [구,상업은행 창립]
1932. 12	조선신탁주식회사 [구,한일은행 창립]
1987.03	증권거래소 상장 1호
1982.10	국내최고 민영화은행
1999.01	한빛은행 탄생
2002.05	우리은행으로 행명변경

2. 주요 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 수입
-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의무 및 책임>

수탁회사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HSBC 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영등포구여의도동 26-4
회사연혁	2000.3.23 에이애텍 설립 2000. 5. 2 에이애텍 설립등기 2003. 8. 1 HSBC, 에이애텍 지분인수(82%) 2004.10. 1 HSBC 펀드서비스(주)로 사명변경

2. 주요 업무

<의무 및 책임>

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격 계산업무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계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
- 투자회사의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
- 법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무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한국채권평가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유화증권빌딩 9층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3번지 대일빌딩 1506호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광화문빌딩 9층
연락처	02-3770-0400	02-398-3900	02-399-3350
설립일	2000. 6. 20.	2000. 6. 16	2000. 5. 29
등록일	2000. 6. 29.	2004. 6. 29	2000. 7. 1.
자본금	30억원	55.5억원	50억원

2. 주요 업무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에게 제공합니다.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구성과 권한> (1)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2)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의결사항>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신탁보수 또는 수수료 인상, 수탁회사 변경, 신탁기간 변경 등 신탁약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익증권 환매의 연기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투자신탁의 합병에 관한 사항

<의결권> 의결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결권은 1좌마다 1개로 합니다.

(2) 수익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의결방법> 수익자총회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의안을 결의하게 됩니다.

(1)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2)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익자는 자산운용사가 우편 또는 전자 메일에 의하여 교부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도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업법 제7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서면을 수익자총회 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소집 주체 및 통지> (1) 수익자총회는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 개최되며,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탁회사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자산운용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2)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연기수익자총회>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증권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2. 잔여재산분배

-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탁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투자신탁 해지에 따른 상환금등을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판매회사에게 인도합니다.
- 수탁회사가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권

-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2)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4) 자산매매거래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

-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에 관한 사항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영업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 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시행령 제 80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감사보고서> 회계감사인은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와 그 간접투자기구의 판매회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기준가격계산서
- (4)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는 비용문제 등을 포함한 회계처리가 당해 종류별 수익증권과 이 투자신탁의 전체 수익증권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1 월에 1 회 이상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유한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수익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법 제 121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 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보고서>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 월 이내에 법 제 123 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유한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수익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가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기공시 확인 장소> 정기공시사항은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http://www.amak.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수시공시

-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www.dimco.co.kr)·판매회사인 영업점 및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5)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명령,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수도
 - (7)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 (8)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재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 <약관변경사항에 대한 공시> 신탁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하며,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모든 수익자에게 통지합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수탁회사의 변경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자산운용회사는 상기 이외의 변경사항은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한 1회이상 공고하며,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의결권 행사> -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투자를 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다만, 약관 제36조 제3항에 의거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시공시확인장소> 정기공시사항은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www.amak.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 펀드명 : 클래스윈신종MMF(S-36호)
- 판매일 : _____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_____
- 판매직원 : 직위 _____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투자자 확인 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